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백혜련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54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7. 18.

발 의 자 : 백혜련 · 이수진 · 서미화
서영석 · 진선미 · 민병덕
김한규 · 박희승 · 염태영
김기표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은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 등 행정청이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, 예외적으로 행정청 외의 자(이하 “민간사업자”라 함)도 행정청의 지정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은 토지 소유의 요건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민간사업자에 한정하여 행정청의 지정을 받아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, 사업시행지역 전체가 아닌 일부 지역에 대하여 민간사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. 일부 지역에 대하여 민간사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게 되면 사업시행자가 되기 위한 토지 소유의 요건 등이 완화되어 적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

으므로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사업시행대상지역 또는 대상시설 전체에 대한 시행자로 지정 받는 경우에 한정하여 민간사업자가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법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(안 제86조제 5항).

법률 제 호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6조제5항 중 “지정”을 “지정(해당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대상지역 또는 대상시설 전체에 대한 시행자로 지정받는 경우에 한정한다)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6조(도시·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) ① ~ ④ (생 략)	제86조(도시·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) ① ~ ④ (현행과 같 음)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 정에 따라 시행자가 될 수 있 는 자 외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시행자로 <u>지정</u> 을 받아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	⑤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지정(해당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의 사업 시행대상지역 또는 대상시설 전체에 대한 시행자로 지정받 는 경우에 한정한다)----- ----- -----.
⑥ · ⑦ (생 략)	⑥ · ⑦ (현행과 같음)